

특정 용역사업 관련 신청에 의한 특정감사

일련번호	2019-004	소관부서	AAAA부	조치부서	BBBB부 AAAA부 CCCC부
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감사결과 총괄

- ○○○은 2016.8.17.부터 2019.5.26.까지 AAAA부(前EEEE부) 과장으로서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.
- 위 사람은 2018년도 연말 부서를 평가하는 업무 진행을 위해 '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평가(종합운영실적평가)'의 용역계약의 추진과정에서 실제 용역기간과 용역계약기간을 상이하게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과업 중 일부 과업만을 검수하여 용역종료 이전 용역대금 전액 지급 하였으며, 용역비에 포상금(400만원)을 반영하여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다.
- 위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)」 제55조(감사), 제58조(대가의 지급)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『용역계약 일반조건』 제27조(대가의 지급)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『예산회계규정』 제77조(용역대가의 선납), 제79조(검수), 제82조(대가지불의 시기)등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.
- 또한, 기재부 「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예규」 제20조 제4항 및 『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』에 의하면 본 평가용역은 '(세목)일반연구비'로 집행할 수 있으나, 내부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를 위한 지출은 '연구용역비'가 아닌 '포상금' 또는 '관서운영경비(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)'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용역비에 편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.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천원)

총건수	합계		변상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수사· 고발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
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소계	추정 (환수)	감액						
3건	-	-	-	1 (1)	-	1 (4,000)	-	-	1	-	-	-	-

3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원, 명)

일련 번호	감사대상 (관계대상자 /부서)	지적사항	처 분 요 구			조치 기한	감사자
			처분 종류	재정상 조치금액	신분상 조치인원		
1	○○○ (DDDD부)	부적절한 용역계약 업무 처리에 다른 직무태만과 회계질서 문란 용역사업 미완료에 따른	경정계 이상	-	1	2019.09.20	김기용 박지은
2	AAAA부	미이행 과업(포상금) 시정(환수)	시정 (환수)	4,000,000	-	2019.10.15	
3	CCCC부	용역계약체결 및 이행관리 부적정	부서 주의	-	-	2019.09.20	

3-1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제목	처 분 내 역			
	조치양정	소속	직급	성명
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(용역업무 수행 및 처리 부적정)	경정계 이상	DDDD부	과장	○○○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

징계 · 시정(회수) · 주의요구

제 목 용역업무 수행 및 처리 부적정

소 관 부 서 AAAA부

조 치 부 서 BBBB부, AAAA부, CCCC부

1. 업무 개요

2018.11.30. EEEE부(現 AAAA부)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(이하 예술위) 내부 부서 업무평가를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.12.7. (사)HHHHHHHHH(이하 용역수행처)와 ‘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평가(종합 운영실적평가)’ 용역계약(이하 평가용역)을 체결하였다.

한편, 담당자 ○○○ 과장은 부서업무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부서 또는 우수과제에 대해서 포상을 할 것을 계획하고 관련부서장 및 본부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결재를 득하였다.

2. 관계 법령 및 규정

용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)」 제55조(감사), 제58조(대가의 지급) 및 기획재정부(이하 기재부) 계약예규 『용역계약

일반조건』 제27조(대가의 지급), 예술위 『예산회계규정』 제77조(용역대가의 선납), 제79조(검수), 제82조(대가지불의 시기) 등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은 용역대가의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용역계약 대금의 지급은 해당 용역사업의 과업이 모두 끝난 후 검사, 검수를 통해 ‘이상(과업의 불이행)’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며 용역계약 기간 내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‘용역 변경’ 또는 계약상대방에 ‘지체 상금’ 청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한편 내부직원에게 포상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「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예규」 제20조 제4항 및 예술위 『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』에 따라 예산비목인 ‘포상금’ 또는 ‘관서운영경비’로 처리하여야 한다.

3. 업무담당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

가. ○○○의 경우

예술위 EEEE부 과장 ○○○(2016.8.17.~2019.5.26./現DDDD부)은 2018.11.30. ‘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평가(종합운영실적평가) 추진계획’ 수립 시 평가용역의 추진기간을 4개월(2018.11월~2019.2월 말)로 계획하였으나 2018.12월 초 CCCC부에 의뢰한 지출품의서에는 용역기간을 1개월(2018.12.7.~2018.12.28.)로 용역 계약체결을 요청하였다.

해당 평가용역은 예술위 내부부서의 업무 및 성과를 평가하는 용역으로 용역의

세부과업은 (1) 예술위 사업평가체계 연구, (2) 부서별 평가지표 연구 (3) 성과평가 (평가단 운영 및 평가) 및 환류과제 도출, (4) 최종보고서 제작, (5) 우수과제 포상 등으로 본 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상 4개월로 계획된 용역이다.

그러나 위 사람은 2018년도 예산으로 용역대가를 전액 지급하고자 과도하게 용역 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, 2018.12.26. 총5가지 세부과업 중 하나인 '2018년도 종합운영실적 평가 편람' 만을 용역수행처로부터 제출받아 용역 계약 이행 검사를 허위로 하고 '용역사업 완료계'를 제출받아 계약담당자(●●● 차장)에게 전달하여 2017.12.27. 용역계약금액 2,650만원을 전액 지급하게 하였다.

또한 용역사업은 용역기간, 용역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용역변경 조치를 함으로서 원활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과업만을 이행 완료하고 용역계약을 종료하였다. 이에, 당초 용역계약(1개월)과는 다르게 실제 용역기간은 연장 진행되었으며 세부과업 중 내부부서(직원)에 지급 목적으로(현 AAAA부 ◎◎◎ 부장은 외부기관을 통해 직원들에게 포상(금품)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라 판단)한 '우수과제 포상' 과업은 이행되지 않았다. 정상적인 용역계약이었다면 이행하지 않은 포상금(400만원)을 제외하고 용역대가(잔금)를 지급하면 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업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포상금을 다시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이 초래되었다.

'우수과제에 대한 포상'은 용역수행처인 (사)HHHHHHHHH가 내부평가결과 우수

한 과제를 수행한 부서(또는 직원)에게 포상을 하고자 한 것으로 용역비에 포상금 400만원(= 500,000원×8개 선정과제)이 포함되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.

그러나, 기재부 「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예규」 제20조 제4항 및 『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』에 의하면 본 평가용역은 '(세목)일반연구비'로 집행할 수 있으나, 내부직원에게 대한 포상 또는 격려를 위한 지출은 '연구용역비'가 아닌 '포상금' 또는 '관서운영경비(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)'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용역비에 편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.

나. ◇◇◇의 경우

現)FFFFFF센터장 ◇◇◇은 2018.4.9.부터 2019.1.1.까지 EEEE부 부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총괄한 자로 ○○○의 前직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업무 감독을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2018년 11월 경 ◇◇◇은 ○○○과 평가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, 보고 받고 결재를 하였으나, 2018.12.3.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계(정직)로 부서장 직위에서 물러나 본 용역계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아 불문한다.

다. ●●●의 경우

위 사람은 2015.11.23.부터 2019.3.3.까지 CCCC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한 자로 ○○○이 2018.12.7. 용역 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2018.12.11. 계약금액 26,500,000원(부

가세 포함)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○○○이 2018.12.26. 제출한 용역완료계, 검수조서,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된 용역이행 완료를 통보 및 용역대금 지급 요청에 따라 관련서류 검토 후 용역대금을 지출하였다.

그런데, 위 사람은 용역의 과업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○○○이 계약의뢰를 위해 송부한 지출품의서,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용역대금도 검수조서 등 관련서류만을 확인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.

관련자들의 주장 및 판단

가. ○○○의 경우

위 ○○○은 실제 용역 소요기간과 다르게 CCCC부에 용역계약 의뢰 시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계약요청을 한 사실과 2018년도 예산으로 용역대금의 전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용역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부과업만 검수하여 용역대금 전액 지급을 요청한 사실, 포상금(또는 격려금)을 별도 예산비목으로 편성·지출하지 아니하고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 지침에 반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.

이에 대해 ○○○은 부서 예산이 매년 부족한 상황에서 2019년도 예산의 여유분을 확보하고자 2018년도 예산으로 본 평가용역비를 집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적 절차 등의 문제점은 간단한 행정적 오류라고 진술하고 있으나,

2017년에 위 사람이 추진한 동일 평가용역에는 용역계약 등 규정에 따라 용역비 선금을 2017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용역계약 이행 완료 후 잔금 등은 2018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었으며, 실사 부족한 예산으로 2018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함이었다면 다음연도로의 예산이월 등 규정된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위 사람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.

나. ●●●의 경우

위 사람은 ○○○이 용역기간을 ‘계약체결일 ~ 2018.12.28.’로 명시하여 요청하였으며 용역비 지급도 용역종료를 통보해움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지출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, 본인은 ○○○이 제출한 서류로는 실제 용역기간을 알 수가 없었으며 계약담당자가 본인 1명으로 연간 수많은 계약요청(연 500건)과 연말에 계약체결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용역의 세부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.

본 평가용역은 예술위 『예산회계규정』에 따라 30백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당시 CCCC부 계약담당자가 1명으로 과다한 계약업무로 모든 과업내용을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용역사업 담당자 ○○○이 실제 소요되는 용역기간과 달리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의 지출품의를 요청한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점이 인정되어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불문한다.

다. (사)HHHHHHHHH 평가용역 담당 ◆◆◆ 컨설턴트

위 사람은 용역수행처의 평가용역을 총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2018년 11월 경 예술위 EEEE부와 용역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였고 CCCC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EEE부 ○○○의 요청에 의해 용역완료계 등을 제출한 것으로 평가용역이 2019년 3월 경까지 진행되는 것은 계약 이전에 협의 된 부분으로 예술위의 내부적인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.

당초 용역과업 중 이행하지 않은 '우수과제 포상' 과업은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본 감사관과의 조사에서 해당금액(400만원)을 반납하겠다고 진술하였다.

징계요구 양정

용역계약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○○○의 행위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, 제58조 및 기재부의 계약예규 『용역계약 일반조건』 제27조, 예술위 『예산회계규정』 제77조, 제79조, 제8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예술위 『인사관리규정』 제44조(징계)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『인사관리규정』의 별표 제1호 1의 다항 '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'으로 판단되는 바 징계요구 양정을 구형한다.

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

- ① 평가용역 계약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○○○(現 DDDD부)을 『인사관리규정』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**징계(경징계 이상)처분** 하시기 바랍니다.[징계]
- ② (사)HHHHHHHHH로부터 기재부 『용역계약 일반조건』 제30조제4항, 예술위 『용역사업 처리규정』 제12조제3항에 따라 평가용역 과업 중 이행하지 않은 **용역비(포상) 400만원을 전액 환수** 하시고[시정(회수)]
- ③ CCCC부장은 앞으로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용역계약 체결을 지양하시고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관련예산 이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, 용역이행 결과 등 검사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[부서주의]